

16

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(법 §54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재설계 및 연장								
○ 취득세 25%(+조례 25%)	○ 지역별 취득세 감면 재설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감면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도권</td><td>취득세 10%(+조례 25%)</td></tr> <tr> <td>비수도권</td><td>취득세 25%(+조례 25%)</td></tr> <tr> <td>인구감소지역</td><td>취득세 40%(+조례 25%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감면율	수도권	취득세 10%(+조례 25%)	비수도권	취득세 25%(+조례 25%)	인구감소지역	취득세 40%(+조례 25%)
구분	감면율								
수도권	취득세 10%(+조례 25%)								
비수도권	취득세 25%(+조례 25%)								
인구감소지역	취득세 40%(+조례 25%)								
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								

□ 개정내용

-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타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고려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되,
 -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

<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감면 재설계 >

< 개정 전 >	구분	< 개정 후 >	
취득세 25% (+ 조례 25%)	수도권	취득세 10%(+ 조례 25%)	축소
	비수도권	취득세 25%(+ 조례 25%)	-
	인구감소지역	취득세 40%(+ 조례 25%)	확대

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다만, 수도권 지역(인구감소지역 제외)의 경우 2026. 1. 1. 전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 적용(부칙 §9)